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9.

발 의 자 : 이병진 · 허성무 · 강준현
소병훈 · 권향엽 · 송옥주
문대림 · 송재봉 · 서삼석
이원택 · 박용갑 · 김 윤
박상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전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설치·운영하도록 하되, 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대부분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선거인은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거주지 인근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됨.

그런데 이번 대통령궐위선거처럼 사전투표기간이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선거인은 자신의 근무처가 소재한 읍·면·동의 1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없어 고충을 겪게 됨.

이에,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

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
것임(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가 있거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. 다만,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